

# 구내식당 위·수탁 계약 특수조건

## 제1조(총칙)

본 계약조건은 부산김해경전철(주)(이하 “계약담당자”라 한다)와 (주)00000(이하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)간의 부산-김해경전철(주) 차량기지 구내식당(매점포함, 이하 “구내식당”이라 한다)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식당 및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## 제2조(계약기간)

본 위·수탁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. 07. 01부터 2022. 06. 30까지로 한다. 단, “계약담당자”의 내부사정이 있는 경우 “계약상대자”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조정할 수 있다.

## 제3조(계약보증금)

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추정운영규모의 100의 10(15,368,400원)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“계약담당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전액은 “계약담당자”에게 귀속된다.

## 제4조(건물 및 시설·설비의 사용 및 반환)

① “계약담당자”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장소(건물)와 주방 설비 및 식사 제공에 필요한 각종 비품(별첨목록 참조)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조 제1항의 건물 및 시설·설비를 성실히 사용·유지 관리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·분실시는 전적으로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수선·보충하여야 한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건물 및 시설·설비 등을 “계약담당자”의 승인 없이 구내식당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구조 변경·개수·타인에 전대 등을 할 수 없다.

④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에는 “계

약담당자”로부터 제공받은 건물 및 시설·설비 등을 즉시 원상회복 후 명도 하여야 하며, “계약담당자”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

⑤ “계약상대자”는 필요한 경우 “계약담당자”의 동의를 얻어 시설·설비 등의 투자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투자 시설·설비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“계약담당자”에 귀속되며, 동 투자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“계약담당자”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### 제5조(운영경비의 부담기준)

“계약담당자”, “계약상대자”는 구내식당 운영경비를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.

#### ① “계약담당자”가 부담하는 비용

1. 건물 및 주방 시설·설비 유지관리비
2. 수도·전기·도시가스 사용료

○ 단, 전기 사용료는 부산-김해경전철(주)가 부담함

3. “계약담당자”는 원활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본사근무자에 한하여 1인당 매 월 일근 12식, 교대근무 6식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지급한다.

####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하는 비용

1. 식재료비, 주방용 소모품비, 사무용품비, 잔반처리비 등
2. 구내식당 종사원의 인건비·복리후생비
3.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, 각종 보험료 등
4. 기타 구내식당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직·간접 비용 등

### 제6조(위생 및 안전관리)

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구내식당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식중독 등 위생상의 사고나 각종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인명 및 재산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고, 또한 이에 대한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조 제1항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인·허가, 신고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고, 감독관청이나 “계약담당자”가 실시하는 각종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한다.

### 제7조(종사원 관리)

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구내식당 종사원을 관계법령에 의거 적합한 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(영양사)으로 운영하여야 하고, 지도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 단, “계약상대자”는 전문 인력(영양사) 교체가 필요할 시 “계약담당자”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“계약담당자”는 본 조 제1항의 구내식당 종사원의 신체·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종사원의 농성·파업·태업 등으로 본 조 제1항의 구내식당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### 제8조(급식수준 및 식단메뉴 등)

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식단메뉴를 운영함에 있어 1식 5찬 이상의 메뉴로 운영하고, “계약담당자” 임직원 및 차량기지 종사자의 영양관리 및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주간 단위로 식단메뉴를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까지 “계약담당자”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각 부서에 배포하고 구내식당 게시판을 설치하여 게시한다.

③ 식자재는 항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식재료비의 비율은 식단가(1식당 4,500원 기준) 대비 50%이상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는 “계약담당자”의 임직원 및 차량기지 상주근무자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하고, 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(식단가)

① 1식당 식단가는 4,500원으로 하고, 조식(라면 등)은 현금 2,000원으로 한다.

② 계약기간 중에는 식단가를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식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운영협의회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10조(급식제공 등)

① 구내식당은 연중무휴로 운영(토,일, 공휴일은 제외)하고,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“계약담당자”의 근무시간 변경 등 내부 사정으로 급식시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따라 급식시간을 변경키로 한다.

(구내식당)

1. 조식(간식)시간 : 08:20 ~ 08:50 (30분)
2. 중식시간 : 11:30 ~ 13:00 (1시간 30분)
3. 석식시간 : 17:30 ~ 18:30 (1시간)

② 매점의 운영시간은 평일 09:00 ~ 18:00까지로 한다.

### 제11조(식권관리 등)

구내식당의 이용은 전자신분증 사용(외부인은 식권 가능)을 원칙으로 하고, 식권의 제작 및 판매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한다.

### 제12조(행사식 및 대체식의 제공)

① “계약담당자”는 필요한 경우 “계약상대자”에게 행사식의 제공(식·음료 및 서비스 포함)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행사식의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실비로 정산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시설·설비 등의 하자로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식을 제공하여야 하며, 지체없이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“계약담당자”의 연회식(식·음료 및 서비스 포함) 요청이 있을 경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연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(식당운영위원회 운영)

① “계약담당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는 공동으로 구내식당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“계약담당자”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정하고, 위원은 “계약담당자”의 직원 2명 이상, “계약상대자”의 실무책임자 및 영양사 각 1명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1회씩 개최한다. 다만, “계약담당자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④ 식당운영위원회를 통해 식당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.

#### 제14조(급식평가)

① “계약담당자” 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“계약담당자”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당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설문조사 내용은 식당운영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조 제1항의 설문조사 결과를 구내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.

#### 제15조(관리감독 및 자료제출)

“계약담당자”는 “계약상대자”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운영실태 및 계약 이행 상황을 점검 및 관련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# 제16조(계약의 해지·해제)

① 계약기간 중이라도 “계약담당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는 어느 일방의 중대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(예정)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한 당사자 일방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“계약담당자”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계약상대자”가 본 계약조건 및 제안서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“계약상대자”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·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
3. “계약상대자”가 위생관리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
4. 기타 “계약상대자”가 구내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

#### 제17조(기타사항)

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“계약담당자”의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심사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도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“계약담당자”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제반법규를 준

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.

#### **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**

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,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.

② 본 계약서상의 모든 내용은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게 해석/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약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.

**붙임 1. 비품 인수인계 확인서 1부. 끝.**

[붙임 1]

## 비품 인수인계 확인서

| 확 인 | 비품 인계 | 비품 인수 |
|-----|-------|-------|
|     |       |       |

| NO | 품 명        | 규 격            | 단위 | 수량    | 확 인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|
| 1  | 냉동냉장고      | 65박스 스텐디지털     | 대  | 1     |     |
| 2  | 가스자동취사기 2단 | 100인용 LNG      | 대  | 1     |     |
| 3  | 가스낮은렌지(뒷백) | 1200×500 LNG   | 대  | 1     |     |
| 4  | 가스렌지       | 1200×600×800   | 대  | 1     |     |
| 5  | 보조작업대      | 400×730×800    | 대  | 1     |     |
| 6  | 다단식선반      | 850×700×1800   | 대  | 1     |     |
| 7  | 2조세정건조대    | 1500×700×850   | 대  | 1     |     |
| 8  | 1조세정대      | 1000×700×850   | 대  | 1     |     |
| 9  | 잔반처리대      | 1500×650×850   | 대  | 1     |     |
| 10 | 잔반운반차      | φ 430×550      | 대  | 1     |     |
| 11 | 배식대/오픈찬장   | 1800×650×850   | 대  | 1     |     |
| 12 | 작업대/하부찬장   | 1200×600×850   | 대  | 2     |     |
| 13 | 2조세정대      | 1200×750×850   | 대  | 1     |     |
| 14 | 냉온정수기      | 400×330×1200   | 대  | 1     |     |
| 15 | 컵소독건조기     | DS703-1        | 대  | 1     |     |
| 16 | 창고선반       | 1200×600×1800  | 대  | 1     |     |
| 17 | 창고선반       | 1500×600×1800  | 대  | 1     |     |
| 18 | 배기후드/유지망   | 1450×1100×600  | 대  | 2     |     |
| 19 | 배기후드/유지망   | 1700×1100×600  | 대  | 1     |     |
| 20 | 벽선반(세정대용)  | 1000×350×700   | 대  | 1     |     |
| 21 | 벽선반(세정대용)  | 1500×350×700   | 대  | 1     |     |
| 22 | 식판건조기      | 1050×480×1300  | 대  | 1     |     |
| 23 | 식탁/의자      |                | 개  | 14/69 |     |
| 24 | 보존냉장고      |                | 대  | 1     |     |
| 25 | 식기세척기      | (주)동양매직        | 대  | 1     |     |
| 26 | TV(42인치)   | 42cs460.AKR    | 대  | 1     |     |
| 27 | 식탁유리       | 800*1700       | 개  | 8     |     |
| 28 |            | 750*1200       | 개  | 6     |     |
| 29 | 선풍기        | LG(SEW-4031RW) | 대  | 3     |     |
| 30 | 자동 방충망     | 1437*2020      | 대  | 1     |     |
| 31 | 식수관리시스템    | 단말기, 프로그램      | 식  | 1     |     |

|    |       |   |   |   |  |
|----|-------|---|---|---|--|
| 32 | 사무테이블 | - | 대 | 1 |  |
| 33 | 원형테이블 | - | 대 | 1 |  |

\* 시설 및 설비의 수선 및 보충은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하고 수명이 다한 장비 교체 시 “계약담당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 만약, 시설 및 설비 수선 시 과도한 금액이 요구될 시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위 구내식당 비품 인수인계를 확인 합니다.

2020. .

부산-김해경전철(주) : (인)

: (인)

**부산김해경전철(주) 대표이사**